

목 차

- I. 설 계 설 명 서
- II. 일 반 시 방 서
- III. 예 정 공 정 표
- IV.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V. 참 고 자 료

I.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2. 용역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전면해상 일원(온산읍 당월리 507, 남구 황성동 827)

3. 용역목적

- 본 공사는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 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처리에 그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 1식
 - 폐콘크리트 : 684ton

5. 설계 변경조건

-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나. 용역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 할 경우
-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라.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 마.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 지체로 대상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 바.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 사. 기타 공사감독자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조건이 발생한 경우

6. 시행방법

-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7.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8. 기타사항

- 가.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피해 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처리한다.
- 나. 본 용역 시행과 관련 다툼(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Ⅱ.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지방서는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적용한다.

1.2 우선순위

이 지방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1 계약문서(이 지방서를 포함한다.)

1.2.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1.2.4 기타 환경관련 법규

1.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1.3.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1.3.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 수급인의 책임한계

1.4.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안전관리의 의무

1.5.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에 시행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유해성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서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단 1.5.2, 1.5.3은 계약상대자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할 경우 적용

1.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용역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1.9.1 착수신고서
- 1.9.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 1.9.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1.9.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10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법령해석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12 폐기물수량정산

- 1.12.1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1.12.2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2.1 폐기물 인계·인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2.2 폐기물 수집·운반

- 2.2.1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2.2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2.2.3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2.2.4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 2.2.5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된다.
- 2.2.6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2.7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3 폐기물 처리

- 2.3.1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 2.3.2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3.3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 2.3.4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3.5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3.6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4 보안대책

- 2.4.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2.4.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사전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방지를 위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4.3. 보안이 특히 요구되는 경우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작업 장소 구분, 출입자 통제) 등을 하여야 하며, 용역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성과물 등은 납품물량만 발행하고 불량·과지 등의 문서는 적절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현장명 : 울산신항 남방파제(1-2공구) 보강공사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폐콘크리트		35.0			45.0				20.0		
공정		35.0			45.0				20.0		
누계공정		35.0			80.0				100.0		

IV. 설계예산내역서

V. 참 고 자 료